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정신건강복지
센터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추가 등〉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0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0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강권’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각각 ‘정신건강’과 ‘심리치료 및 상담’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수행 업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u>영양개선</u> ,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 ----- ----- <u>정신건강, 영양개</u> <u>선</u>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u>건강증진사업</u> 등 장애인 건강보 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 ----- ----- ----- <u>심리치료 및 상담, 건강증진사</u> <u>업</u>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 11. (생략)

② (생략)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략)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의 연계체계의 구축

4.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 5. (생 략)

② (생 략)

2의2.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 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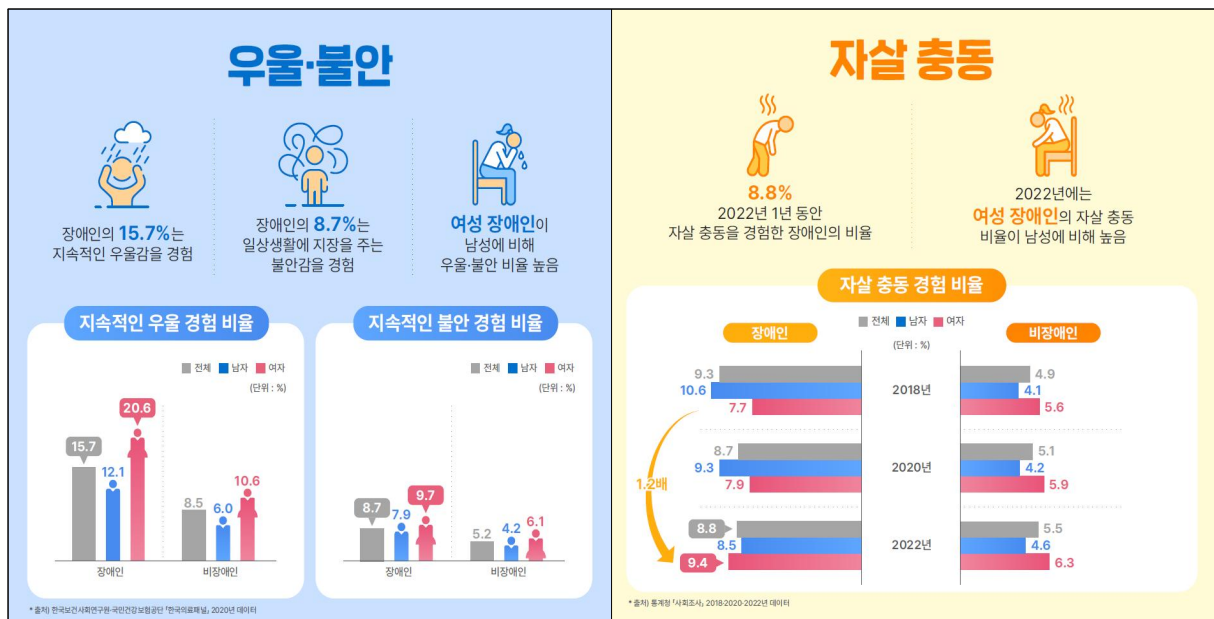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2024년 발간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15.7%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8.8%는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되어, 각각 비장애인의 우울감 경험 8.8%, 자살 충동 5.5%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61.3%와 56%는 각각 ‘정신건강 문제 관리에 대한 정보’와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정신건강 정보 접근성



장애인의 **61.3%**에게는
정신건강 문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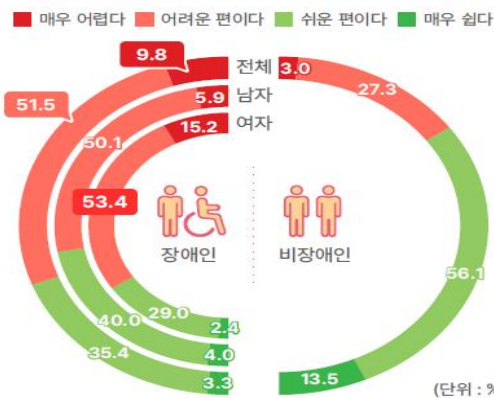


장애인의 **56%**에게는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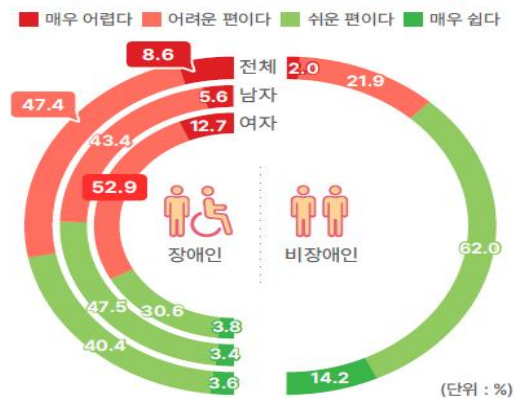


여성 장애인은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정신건강 문제 관리 정보 접근성



정신건강 증진 방법 정보 접근성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패널」, 2020년 데이터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KODDI 통계 뉴스레터.

□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우울과 자살 충동을 더 높은 빈도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접근은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삶의 질 저하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은 ① 현행법상 ‘건강권’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정의 조항에 각각 ‘정신건강’과 ‘심리치료 및 상담’을 포함하도록 하여(참고자료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개요),

구분	현행법	개정안
안 제3조제2호 건강권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 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	‘정신건강’ 추가
안 제3조제4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	‘심리치료 및 상담’ 추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②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¹⁾의 수행업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²⁾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참고자료 2: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현황),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25년 3월 기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각각 1개소 (국립재활원)와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7개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24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관련 기관 간 비교 >

2025년 7월 기준

구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정 현황	국립재활원	보라매병원 등 17개소	전국 263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246개소)
법령근거 및 수행업무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 장애의 예방·진료·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 -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광역)지역 정신건강 연구조사 및 확산 (광역)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기초)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사례관리, 재활지원 (기초)정신건강 위기개입 (기초)찾아가는 심리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홍보·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지역 특화 사업 등

구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밖에 보건복지 부 장관이 필요하 다 고 인정 하는 사업		
예산 (국비/지방비)	4억 5,600만원 (국립재활원은 책임운 영기관으로 내부적으 로 확정되는 예산액은 수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비 46억 8,100만원 - 지방비 46억 8,100만원	- 국비:(운영비) 81억 6,400만원,(인건비) 865억 4,700백만원 - 지방비: 국비와 동일
수행 인력	총 15명	총 119명 (센터당 7명)	총 4,388명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 제3조제2호 및 제4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³⁾에서 ‘건강권’을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신건강’도 이미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⁴⁾에서도 ‘정신건강’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으나, 정신건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건강권” 정의에 ‘정신건강’을 추가하는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심리치료 및 상담’의 경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⁵⁾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전달체계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현황>

구분	등록자 수	장애 있음	장애 없음
2023년	80,044명	19,101명 (23.9%)	60,943명 (76.1%)
2024년	78,964명	22,753명 (28.8%)	56,211명 (71.2%)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 국립재활원에서는 심리치료를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는 “건강권”에는 이미 정신건강이 포함되며, 심리치료는 치료행위로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나 심리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5)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와 일반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음.

□ 둘째, 개정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추가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19조제1항제1호6)에서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정신건강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존 조항의 포괄적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장애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법률에 근거한 연계체계 차원에서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통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국립재활원은 정신건강에 국한한 별도 연계체계 구축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고유 업무에 대한 혼란과 기존 건강관리체계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는 정신 재활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되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만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나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특정 기관과의 연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것은

현재도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기관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정신건강 분야만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에 장애인 심리치료 등 정신건강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7)에 따른 전국민 정신건강 전달체계 내에서 장애인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불안·고독 등의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개정안 제3조제4호 중 ‘심리치료’ 제외 필요함.

- 심리치료는 신경증, 정신증, 성격장애와 같이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정신장애를 병원, 전문상담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 제19조제1항제3호의2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동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일환으로 이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정신건강에 국한한 별도의 연계체계 구축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포괄적 업무 성격과 상충되어 고유 업무에 대한 혼란과 기존 건강관리 체계의 위축이 우려됨.

다. 경기도

□ (사업범위) 법에 제시된 “건강권”의 개념에 정신건강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심리치료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공공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치료’ 미제공) 연계로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연계체계) 장애인 진료는 병원의 고유 업무이며, 정신 재활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돌봄제공자의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어 하나의 기관만을 지정하여 연계·협력을 법률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체계 구축에 따른 혼선 가중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및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24시간 상담 가능한 창구 개설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통한 사업 중복 및 혼선 예방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통합지원으로 조기사회복귀 도모
- (주요내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CBR 간 유기적인 전달체계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도 >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립재활원에 설치되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총괄 기획·운영·지원, 건강보건통계·연구·정보 제공 등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 주치의, 보건소 등 건강관리사업 조정·지원, 검진·재활 진료 등 거점병원 역할,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 종사자 교육 등
 - * 지정현황 : ('18) 3개소 → ('19) 6개소 → ('20) 10개소 → ('21) 14개소 → ('22) 17개소
- (보건소CBR*)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 사회복귀 및 건강관리 지원
 - * ('11) 거점보건소 60개 → ('17) 전국 보건소 필수사업 → ('18) 장애인건강권 실무기관으로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현황〉

연번	명칭	지정일	소재지	운영기관	종별
1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8.3.12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	병원
2	서울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8.4.30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종합병원
3	대전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8.5.9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4	경남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8.4.30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5	서울북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9.4.23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	병원
6	강원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9.4.24	강원 춘천시	강원도재활병원	병원
7	전북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9.5.1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8	인천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0.6.29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상급종합병원
9	부산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0.6.29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0	경기남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0.6.30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상급종합병원
11	제주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0.6.26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12	대구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1.7.20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병원	상급종합병원
13	광주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1.7.8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상급종합병원
14	충북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1.7.15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	상급종합병원
15	경북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1.8.2	경북 경산시	경북권역재활병원	병원
16	경기북부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2.10.4.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종합병원
17	충남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2.10.20	충남 홍성시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종합병원
18	전남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2.12.7.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종합병원

주1): 2025년 3월 기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 세종 제외 지정 완료
자료: 보건복지부